제２８５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Seoul Is Tomorrow"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 보고

2019. 3.

서울기술연구원
Seoul Institute of Technology

서울기술연구원 정관개정 보고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제36조에 따라 정관 개정 사항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제36조

제36조(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관 현황

○ 정관명칭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 구　　성 : 총 7장 36개조 및 부칙

○ 제개정 현황

- 2018.3.27.: 제 정
- 2018.6.19.: 개 정

☐ 정관 개정사항

○ 개정내용

- 제6조제2항 : 당연직 이사를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에서 안전총괄관으로 개정
  - ▸ 안전총괄관(안전총괄실장 보좌)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여 강화
- 제7조제1항 : 임원의 연임을 '1년 단위'로 개정
  - ▸ 연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임원 연임기간을 1년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 가능
- 제26조 : 결산서류 등의 제출을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개정
  -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과 「서울기술연구원 정관」에서 규정한 결산서류 등의 제출기한을 동일하게 운영

○ 이사회 의결 : 2019. 2 .26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원의 임면) ① (생 략)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장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③ (생 략)	**제6조(임원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관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결산) 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호계감사를 받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26조(결산)** 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향후 일정

○ 시의회 보고후 서울시 승인 요청 (서울기술연구원→안전총괄과)

○ 서울시 승인 후 정관 효력 발생